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40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 청소년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승재(기소), 박재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설

판 결 선 고 2026.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¹⁾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5. 6. 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동에 있는 피고인이 머무는 사택에서 피고인이 SNS 'X' 어플을 통해 게시한 '델구, 술 담배 대리구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가명, 여, 12세)와 술·담배 대리구매를 두고 대화하면서 피해자 D에게 '대딸밖에 안 받는데 괜찮겠나'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 D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대구 달서구 성당동 소재 골목길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가명, 여, 12세)을 만났고,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는 과정에서 나이를 물어 피해자들이 15살이라고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피해자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인근 상호불상의 빌라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위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 전면 유리에 우산을 펼쳐 외부에서 차량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한 후,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들 사이 가운데에 앉고,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피고인의 왼쪽에 앉은 피해자 E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은 피해자 D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손으로 만지며 쓰다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다가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면서 사정 직전에 피고인이 직접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한 후, 그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요구한 시가 합계 약 9,000원 상당의 맥주 4캔과 담배 1갑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피해자들을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추행함과 동시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5. 6. 5. 17:50경 제1항 기재 'G' 인근 상호불상의 빌라 주차장에서, 피



해자 D로부터 요청을 받고 구매한 청소년유해약물인 '스트롱사와 복숭아' 맥주 2캔, '카스' 맥주 2캔, 품명불상의 담배 1갑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H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8,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21, 25, 30, 첨부자료 포함)

1. 전자정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둢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²⁾ 및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행위는 경제적 유인에 취약한 점을 이용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일 뿐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매수 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15세라고 인식한 채 청소년유해약물인 술과 담배를 대가로 지급하여 성을 매수하고, 위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5. 9. 피해자 E 측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변론종결 후인 2026. 7. 31. 피해자 D를 위하여 15,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다만, 피해자의 변호사가 2026. 8. 25.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공탁사실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 중 하나로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참작한다),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그릇된 성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도정원 _____

 판사 우정우 _____

 판사 강화현 _____